

3. 建築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66號 1993. 4. 27

1.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

- 가.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내에서 연면적합계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공장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하도록 하였음.
- 나. 공장과 주택을 지하층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과 주택의 건설공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음.
- 다.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폭의 3배까지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그 대상지역을 모든지역으로 확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라.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규모를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미만에서 1천제곱미터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음.
- 마.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바닥면적합계 300제곱미터미만에서 500제곱미터미만으로 상향

조정하였음.

- 바.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조정하였음.
- 사.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한 대상용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하였음.
- 아.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시설중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2. 의견제출

이 영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도시국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